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97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 강경숙・황운하・김한규

조 국・김준형・이해민

이재정 · 김선민 · 백승아

박은정 · 김재원 · 강유정

신장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교원의 학생 교육·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원) ① (생 략)	제14조(교원)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		
	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u>②</u> ~ <u>⑥</u> (생 략)	<u>③</u> ~ <u>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